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조상호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변호 **374** 발의연월일 : 2019년 1월 31일 발 의 자 : 조상호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인호, 이승미, 전병주, 박순규,

장상기, 김제리, 이병도, 여 명, 권순선, 김수규, 채유미, 최 선

의원(12명)

1. 제안 이유

○ 현행 조례상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 등의 행위에 따른 공익 제보 시의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1억원 이내에서 2억원 이내로 하고, 포상금 지급시 금품·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라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포상금 지급액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공익신고의 적극적인 유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지급기준별 포상금액의 포상금액 중 금품·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라는 제한규정을 삭제하고, 포상금액 중 1억원을 2억원으로 확대함(안 별표)

3. 참고 사항

가. 관계 법령 :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 조치 : 해당 없음 (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보유형(지급대상)에서 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의 포상금액을 "금품·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(지급한도액 1억원)"에서 "2억원 이내"로 하고, 제보유형(지급대상)에서 그 밖에 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행위 중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제보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의 포상금액을 "1억원 이내"에서 "2억원 이내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의 공익제보에 대해서 도 적용한다. 다만, 포상금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【별표】	【별표】
포상금 산정기준(제15조 관련) 1. 지급기준별 포상 금액	포상금 산정기준(제15조 관련) 1. 지급기준별 포상 금액
제보유형(지급대상) 포상금액	제보유형(지급대상) 포상금액
교직원등이 직무 와 관련하여 금품 을 수수하거나 향 응을 제공받는 행 위	교직원등이 직무 와 관련하여 금품 을 수수하거나 향 <u>2억원 이내</u> 응을 제공받는 행 위
그 밖에 시교육청 적인 부조리 등을 의 청렴도를 훼손 제보하여 청렴도 한 부조리행위 향상에 획기적으 로 기여한 경우	구조적이고 근본 지보하여 등을 의 청렴도를 훼손 제보하여 청렴도 이내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제보유형 (지급대상)에서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의 포상금액을 "금품・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(지급한도액 1억원)"에서 "2억원 이내"로 하고, 제보유형(지급대상)에서 그 밖에 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행위 중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제보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의 포상금액을 "1억원 이내"에서 "2억원 이내"로 확대함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2호
-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현행 본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특별시교육청은 '공익제보포상금제운영' 사업을 기 추진하고 있음(붙임1 첨부자료: 2019년 예산액 9천만원)
- 조례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향후 공익제보 신고가 늘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그 건수나 제보유형, 평균 보상금 지급액의 추계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상황임(2010~2018.6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건수 제보유형 및 지급액을 붙임2로 첨부함)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
예산분석관 원동아

© 02-2180-7954

e-mail: dongya1@seoul.go.kr

붙임1 개정조례안 관련 서울시교육청 기추진 내역

조례	2019 예산 (단위:천원)	비고
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	90,000	 사업명: 공익제보포상금제운영 사업목적: 교육청 창렴도 향상에 공적이 있는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및 보상금(구조금 포함)을 지급하여 부조리행위 근절 -대상: 교육청 창렴도 향상에 공적이 있는 공익제보자 -내용: 공익제보위원회를 통해 포상금 및 보상금(구조금 포함) 지급대상 및 금액 등을 결정하여 지급(연 2회 이상) -소요예산: 90,000천원

붙임2

2010 ~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실적

- □ 공익신고 접수 기간 : '10. 2. 1. ~ '18. 6. 30.
- □ 2010 ~ 2018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내역

연번	년도	접수 기간	지급 건수	보상금 지급액	비고
1	2010	2010. 2. 1. ~ 2010. 10. 31.	6	1,550만원	포상금
2	2011	2010. 11. 1. ~ 2011. 6. 30.	9	2,150만원	"
3	2012	2012. 1. 1. ~ 2012. 6. 30.	3	550만원	"
4	2013	2012. 7. 1. ~ 2012. 12. 31.	1	500만원	
5	2014	2013. 7. 1. ~ 2013. 12. 31.	1	1,000만원	"
6	2015	2014. 1. 1. ~ 2014. 12. 31.	1	180만원	"
7	2016	2016. 1. 1. ~ 2016. 6. 30.	2	250만원	"
8	2017	2016. 7. 1. ~ 2017. 6. 30.	7	5,200만원	"
9	2018	2017. 6. 30. 이전 접수 기간	4	1,000만원	"
합계			34	12,380만원	

[※] ①각 연도의 **지급전수는** 당해연도 공악신고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그 해에 보상금 지급이 결정 난 전수임

②공익신고가 접수되어도 해당 전에 대한 재판진행, 사건처리 기간 등으로 보상금 자급 결정이 나오기 까지 평균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은 바. 접수기간이 각 연도와 일차하지 않을 수 있음

□ 공익신고 접수 기간 : '10. 2. 1. ~ '10. 10. 31.

□ 공익신고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개최 : '10. 12. 13.(월)

□ 2010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내역

연번	건 명	주요 지적사항	보상금 지급액	비고
1	○○교 영어전용교실 설치공사 비리	o 무면허인 특정업체에게 영어전용교실 공사 발주 특혜	300만원	
2	○○교 전임교장 회계부정	o 개인 경조사비 257만원 부당 지출	200만원	
3	○○교 교장 전근대적 학교운영	o 어린이신문 구독 관련 부적정 o 교직원 식대를 학부모가 부담	250만원	
4	○○교 시설공사 부적정	o 무면허 업체와 교실 창호공사를 게약하고 공사비를 과다 집행	250만원	
5	○○교 교장 관련 진정	o 학교발전기금을 통한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음 o 결혼 청첩장을 학부모단체 임원들에게 통지 하고 축의금 수수	300만원	
6	○○교 교사 촌지 수수	o 교원이 30만원 상품권을 수수	250만원	
합계			1,550만원	

- □ 공익신고 접수 기간 : '10. 11. 1. ~ '11. 6. 30.
- □ 공익신고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개최 : '11. 8. 25.(목)
- □ 2011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내역

연번	건 명	주요 지적사항	보상금 지급액	비고
1	○○교 골프부 유니폼 대금 횡령	o 골프부 유니폼 대금 업무상 횡령(유용)	100만원	
2	○○교 도서관 회비 징수	o 불법찬조금 모금 및 수수	400만원	
3	○○교 교사 임용시험	o 교원채용관리 부적정 o 신규교원 채용 문제유출	500만원	
4	○○교 학생회 임원 선출 불공정, 불법찬조금 모금	o 학생포상 절차 및 관리 부적정 o 학부모회 불법찬조금 조성에 가담(해당교 교원)	200만원	
5	○○교 불법찬조금 모금	o 불법찬조금 모금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o 학교발전기금 관리 부적정	200만원	
6	○○교 교사 채용비리	o 교원 신규임용 업무 처리 부적정	150만원	
7	○○교 교장의 부정적한 학교경영	o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관리 부적정 o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(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)	300만원	
8	○○교 불법찬조금 모금	o 불법찬조금 모금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	100만원	
9	○○교 야구부 감독의 비위	o 운동부 후원금 조성 및 집행 부적정 o 운동부 코치 인건비 추가 지급 및 부당 운영	200만원	
합계			2,150만원	

2012년도 상반기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실적

□ 공익신고 지급 대상 기간	<u>!</u> : '12.	1. 1.	~ '12.	6.30.
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	-------

□ 공익신고 보상금지급	심의위원회 개최	: ′12	. 8.	29.(수)
-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	------	-------	---

2012년	상반기	공익신고	보상근	지근	내옄
	$o \vdash \prime$	075-		* 11 🗀	

연번	건 명	주요 지적사항	보상금 지급액	비고
1	○○교 교사(축구감독)의 불법사항에 대한 학부모의 진정	o 축구부 후원회 운영 및 축구부 기부금품 집행 부적정o 활동비 부당 수령 및 명절 등 금품 수수	300만원	
2	○○교 세입사무(공금 횡령 및 유용) 비리	o 수입금 개인용도 임의 사용(공금횡령 및 유용)	150만원	
3	○○교 세입사무(공금 횡령) 비리	o 수입금 개인용도 임의사용(공금 횡령)	100만원	
합계			550만원	

2013년도 하반기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실적

□ 공익신고 지급 대상 기간 :	'12. 7. 1.	~ '12. 1 ²	2. 31.
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

- □ 공익신고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개최 : '13. 3. 7.(목)
- □ 2012년 하반기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내역

연번	건 명	주요 지적사항	보상금 지급액	비고
1	OO부고 체육교사 (축구부 감독교사) 비리 민원	○직무관련 금품 및 향응 수수 ○학생 폭력·폭언 및 학생 간 폭력 묵과	500만원	
합계			500만원	

2014년도 하반기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실적

□ 공익신고 지급 대상 기간	: 2013. 7. 1	. ~ 2013. 12. 31.
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공익신고	보상금지급	심의위원회	개최	: 2014	3	17 (월)
075-	_00110	0-110-	7 —	· _ U I T .	U .		

□ 2013년 하반기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내역

연번	건 명	주요 지적사항	보상금 지급액	비고
1	〇〇학원(〇〇유 및 〇〇초) 비리 고발	○유치원 교육과정(누리과정)내 영어교육 부당 실시 ○학교 근무자가 아닌 자에게 급여 부당 지급 ○학부모로부터 받은 발전기금 부당 사용	1,000만원	
합계			1,000만원	

2015년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실적

- □ 공익신고 지급 대상 기간 : 2014. 1. 1. ~ 2014. 12. 31.
- □ 공익신고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개최 : 2015. 3. 20.(금)
- □ 2014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내역

연번	건 명	주요 지적사항	보상금 지급액	비고
1	ㅣ _ 운동부 코지	○학부모로부터 금품 수수 ○학교운동부 후원금 조성.집행 관리 부적정	180만원	
합계			180만원	

□ 공익신고 지급 대상 기간 :	2016. 1.	1. ~ 2016.	12. 31.
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

□ 공익신고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개최 : 2016. 11. 25.(금)

□ 2016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내역

연번	건 명	주요 지적사항	보상금 지급액	비고
1	OO학원 재단 비리	○교육과정 편성 업무 부당 처리 ○교과교실제 설계용역 예산 낭비 ○회계업무처리, 시설공사, 급식운영, 기간제 교원 채용업무 부적정 ○불법찬조금 및 촌지 예방지도 업무 소홀 ○행정실장 부당해임으로 법인회계 예산 낭비	100만원	
2	OOO중 운영 비리	○청소년단체 운영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적정 ○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○학교급식 위탁업체 선정 업무 부적정 ○조리종사원 성범죄경력 미조회 ○업무추진비,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○진로진학상담센터 조성공사 건축승인 미신고	150만원	
합계			250만원	

- □ 공익신고 지급 대상 기간 : 2016. 7. 1. ~ 2017. 6. 30. (이전 접수 기간 건 포함)
- □ 공익신고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개최 : 2017. 12. 1.(금)
- □ 2017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내역

연번	건 명	주요 지적사항	보상금 지급액	비고
1	OO학교 급식 비리	○학교급식 배송인원수 조작 ○학교급식 식자재 절도	2,000만원	
2	OO학교법인 비리	○학교직원 인건비 횡령 ○법인회계에서 개인소송비 집행 ○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	2,000만원	
3	○○학교회계 예산 무단 인출 등	○학교회계 자금 무단 집행 ○교원인사위원회 미운용	500만원	
4	〇〇학교 회계 비리	○학교직원 인건비 횡령	200만원	
5	OO학교 돌봄교실 운영 비리	○학교 돌봄교실 간식비 횡령	200만원	
6	OO학교법인 비리	○학교법인 이사장의 학사 개입 ○교원 신규채용 부적정 ○수학여행 계약 부적정	200만원	
7	OO학교 비리	○학교 회계질서 문란 ○교원 신규채용 부적정	100만원	
합계			5,200만원	

2018년도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실적(|)

□ 공익제보 지급 대상 기간 : ~ 2017. 6. 30.

(이전 접수 기간 건 포함)

□ 공익제보위원회 개최 : 2018. 2. 21.(수)

□ 2018년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내역

연번	건 명	주요 지적사항	보상금 지급액	비고
1	OO학교 교원 채용 등	○2015 체육교과 교사 채용의 문제 ○전 이사장의 학사 관여 ○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	100만원	
합계			100만원	

2018년도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실적(॥)

□ 공익제보 지급 대상 기간 : ~ 2018. 6. 30.

(이전 접수 기간 건 포함)

□ 공익제보위원회 개최 : 2018. 8. 30.(목)

□ 2018년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내역

연번	건 명	주요 지적사항	보상금 지급액	비고
1	○○학교 기관장 학사운영 부적정	○예비신입생 프로그램 방만 운영 ○겸직허가 없이 출강하고 해당일에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 받음 ○학생들을 행사도우미로 동원, 교사에게 학 교차량 운행 지시 ○업무추진비, 학생 해외 연수비를 사적으로 사용	500만원	
2	OO학교 옥상 방수공사 감독 소홀	○학교 옥상 방수공사 시 불량자재를 사용하여 준공 3개월만에 박리현상(상부 벗겨짐 현상) 발생		
3	〇〇학교 교원 채용절차 부적정	○정교사 채용공고문에 원서 접수 마감일 (2017. 12. 29.)을 지나서 최종합격자 원서를 2018. 1. 2. 접수	200만원	
합계			900만원	